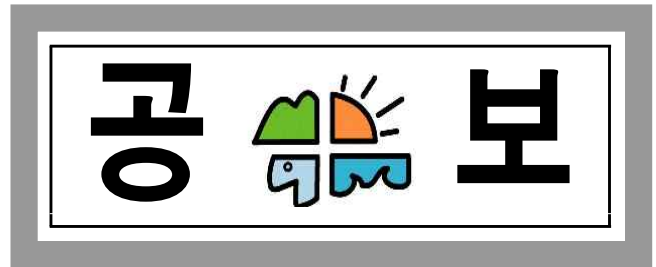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05호 2014년 12월 5일(금)

공 고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회 란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상위법령과의 관련조문 불일치에 따른 조문 수정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추가 신설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탁자의 자격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및 강원도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 마련으로 관련 조항 개정

3. 주요내용

- 제2조의 제목을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으로 수정(안 제2조)
-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표시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2조 제3항 및 제4항)
-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의 수탁자자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명시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명시(안 제7조 제1항 제2호)
- 공영주차장 위탁이 취소된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위탁관리 신청 제한 근거를 마련(안 제7조제5항)
- 상위법령과 조례안의 관련조항 불일치 및 그 밖의 법령용어 문구 수정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전화: 033-639-2367, FAX: 033-633-5006)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33-639-2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속초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주차장법」”으로 하고,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을 “(주차요금)”을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주차요금”을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영주차장은 계절 및 요일에 따라 주차수요 교통혼잡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 안내표지판에 게시 공고해야 하며,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본문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를 “「도로교통법」 제2조”로 하고, 제2호 중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9조제3항”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의 “시장이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관리수탁자가 위탁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신청에 응할 수 없다.

제10조제1항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 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10조제1항의” 를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로 하며, “규칙” 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주차구획” 을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으로 하고, 제1항제3호와 제2항제3호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으로 하며, “동법률 제9조” 를 “같은 법률 제21조” 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로 하고, “동법시행령” 을 “같은 법률 시행령”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심사의뢰안	심사확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신설> <신설> 제3조(주차료의 감면) 제2조의 주차료 면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로서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2. 「장애인 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유차량으로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가산금)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공영주차장은 계절 및 요일에 따라 주차수요 교통혼잡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안내표지판에 게시 공고해야 하며,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주차료의 감면) 제2조의 주차료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로서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소유차량으로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50퍼센트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4조(가산금)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

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1. ~ 3.(생략)	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 2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생략) 1. (생략) 2. <u>시장이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u> <u><신 설></u>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u>⑤ 제4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관리수탁자가 위탁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신청에 응할 수 없다.</u>
제10조(노상주차장의 표지등) ① 노상 주차장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의 주차장표지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표지등) ① 노상주차장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의 주차장표지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제15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로부터 <u>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당해 지역의 별표1</u>	제15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u>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로 부터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u>

의 월정기권(주·야간)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생략)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구성에 사용된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이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생략)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을 당해 지역의 별표1의 월정기권(주·야간)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구성에 사용된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②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등)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4.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등)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주차장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 22호 라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

정한다. <개정 2010.12.31, 2011.12.6>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중 도주자 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 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개정 2010.12.3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

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주의표지·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표시하는 뜻은 별표 6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고, 영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은 관계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문서의 사본에 의하여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종목 또는 품목에 한정하여 발급받은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5]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7.4.27>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삭제 <2005.12.7>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1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 하여야 한다.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안 제7조제1항2호)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강원도

Lively
Gangwon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안 통보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766호, 강원도
법무통계담당관실-7669(2013.10.7.)호의 관련입니다.

2. 도내 시·군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이 '13년 6월말 현재 81.1%로
전국 평균 82.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3. 도에서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자 공정거래위
원회와 함께 개선대상 규제 20건(6개 시·군, '13.10.1.현재)에 대한 개선안을 마
련하여 통보하오니 시·군에서는 해당 조례 개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붙임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안 1부. 끝.

강원도지사

수신자

원주시장(자치행정과장), 태백시장(자치행정과장), 속초시장(자치행정과장), 홍천군수(안전행정과장), 양구군수(기획감사실장), 고성군수(안전자치행정과장)

주무관

박윤수

규제분권담당

서화진

법무통계담당관

전결 10/21
홍종열

협조자

시행 법무통계담당관-8190 (2013.10.21.) 접수 자치행정과-20848 (2013.10.21.)

우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강원도청) / <http://www.provin.gangwon.kr>

전화 033-249-3054 / 전송 033-249-4015 / qkrdbstn@korea.kr / 공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안

□ 자치법규 개선현황 (공정거래위원회)

(2013.10.1. 현재,)

구분	개선합의 (A=B+E)	개선이행 현황							개선 예정 (E)	개선율
		계 (B=C+D)	개선 (C)	기타 (D)						
				소계 (D)	합의대 상아님	제외 대상	조례 없음	중복 조항		
계	132	112	52	60	4	48	8	0	20	85%
춘천시	10	10	7	3	0	3	0	0	0	100%
원주시	6	4	2	2	1	1	0	0	2	67%
강릉시	4	4	3	1	0	0	1	0	0	100%
동해시	2	2	1	1	0	0	1	0	0	100%
태백시	5	4	4	0	0	0	0	0	1	80%
속초시	3	2	1	1	0	0	1	0	1	67%
삼척시	6	6	6	0	0	0	0	0	0	100%
홍천군	5	3	0	3	0	3	0	0	2	60%
횡성군	8	8	3	5	0	5	0	0	0	100%
영월군	5	5	1	4	1	1	2	0	0	100%
평창군	8	8	2	6	1	4	1	0	0	100%
정선군	1	1	0	1	0	0	1	0	0	100%
철원군	4	4	2	2	0	2	0	0	0	100%
화천군	5	5	1	4	1	3	0	0	0	100%
양구군	12	7	4	3	0	3	0	0	5	58%
인제군	14	14	9	5	0	5	0	0	0	100%
고성군	32	23	4	19	0	18	1	0	9	72%
양양군	2	2	2	0	0	0	0	0	0	100%

□ 개선대상 목록(공정위 자료)

연번	시군	관리 번호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명	경쟁제한 유형	제한내용
1	원주시	원주-03	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제9조	사업활동 제한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소비자의 이익 저해)
2	원주시	원주-04	수도급수 조례 제8조	기타	관급자재에 대한 특별취급
3	태백시	태백-0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	진입제한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운영(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등 미비)
4	속초시	속초-05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진입제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업
5	홍천군	홍천-01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사업활동 제한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소비자의 이익 저해)
6	홍천군	홍천-08	종합문화복지관 관리운영 조례 제8조	“	“
7	양구군	양구-03	방산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진입제한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운영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등 미비)
8	양구군	양구-05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사업활동 제한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소비자 이익 저해)
9	양구군	양구-06	양구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8조	진입제한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운영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등 미비)
10	양구군	양구-07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20조	사업활동 제한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소비자 이익 저해)
11	양구군	양구-1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진입제한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자격, 선정기준 등 미비)
12	고성군	고성-12	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진입제한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운영
13	고성군	고성-15	여성회관 관리 조례 제4조	사업활동 제한	수강료 반환규정미비 (소비자의 이익 저해)
14	고성군	고성-16	여성회관 관리 조례 제4조	사업활동 제한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소비자의 이익 저해)
15	고성군	고성-17	여성회관 관리 조례 제6조	진입제한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운영
16	고성군	고성-19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4조	“	“
17	고성군	고성-21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	“	“
18	고성군	고성-24	주차장 조례 제7조	진입제한	공영주차장위탁관리사업
19	고성군	고성-25	진부령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사업활동 제한	사용료 반환규정 미비 (소비자의 이익 저해)
20	고성군	고성-30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제24조	진입제한	공영시설의 위탁관리운영

□ 개선안

연번	시군조례명	현행	개선안
4	속초-05 주차장 및 조 설치 관리 조례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5.31>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u>시장</u> 이 공공시설물 관리의 <u>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u> 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장 상인회가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02.15, 개정 2013.5.31>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5.31>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u>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u> 3.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하여 설립된 기장 상인회가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7.02.15, 개정 2013.5.31>
5	홍천-01 노인 복지 관 운영 조례	제10조(시설 사용료등의 예약 및 반환) ①시설물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료의 30퍼센트를 납부하여야만 예약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때 2. 휴양림 관리·운영자의 필요에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예약된 시설물사용을 해약한 경우의 환불기준은 <u>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중 국내숙박여행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u>	<u>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바뀌었음</u> <수정> <u>공정거래위원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6	홍천-08 종합 문화 복지관 관 리 운영 조례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u>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u>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복지관사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u>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u> <u>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u>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5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인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세목의 개정등 조문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규정하는 세입재원을 명확히 하고,
- 조례의 조문과 상위법령과의 불일치에 따른 조항 수정 및 필요한 조항 신설 등 개정을 통해 조례 정비

3. 주요내용

- 제명의 띄워쓰기
- 「도로법」 제43호 관련 주차목적 도로점용료의 조문 삭제 (안 제2조제1항제5호)
- 피견인자동차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적용조례 변경 (안 제2조제1항제7호)
- 부설주차장 운영관련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조문 신설 (안 제2조제1항제11호)
-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조문 수정 (안 제2조제2항)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담당(전화: 033-639-2367, FAX: 033-633-5006)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33-639-2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를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 를 “「주차장법」 제21조의2” 로 하고, “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를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이 회계”를 “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하고, “다음 각호의” 를 “다음 각 호의” 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법” 을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로 하며, 제5호의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호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를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로 하고, 제6호 중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 로 하며, 제7호 중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로 하고, 제11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함과 동시에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제11호에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을 신설한다.

제2조제2항 중 “「주차장법시행령」”을 “「주차장법 시행령」” 으로 하고,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를 “당해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의 제명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 산정기준에관한조례」” 을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u>속초시주차장특별회계</u>(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 ~ 4. (생략) 5. 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3호 관련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7.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견인료 8 ~ 10. (생략) <u><신 설></u>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u>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u>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u>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 <u>속초시 주차장특별회계</u>(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 2.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부과 및 징수한 과태료 7. 「속초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견인료 8.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1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주요 관계법령 발췌

□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징수한다.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지방경찰청장
2. 제160조제2항(제49조제1항제1호·제3호,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3. 제160조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전문개정 2011.6.8]

□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7.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 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3.1.1>[제목개정 2013.1.1]

□ 속초시세조례

제15조(과세특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 속초시주차위반자동차견인등소요비용산정기준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령"이라한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보관·공고등에 소요된 비용(이하"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